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06호, '21.1.21. 공포, '25.7.22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청년상인 육성 지정기준 마련(안 제6조의3제1항 신설)

- 1) 정관 또는 규약의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의 업무가 포함
- 2)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
- 3)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, 교육·실습 시설 보유

나.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선정·공고 절차 규정(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)

다. 전문기관의 사업계획·추진실적 보고를 규정(안 제6조의3제4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각 부처와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3. 31) 예정.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비대상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등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 및 활성화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
2.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
3.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·실습시설을 보유할 것

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.

④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전주”를 “전봇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3(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등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 및 활성화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</u> <u>1.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</u> <u>2.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</u> <u>3.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·실습시설을 보유할 것</u> <u>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</u>

제9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)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(이하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라 한다)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·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.

1. (생략)
2.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
가.·나. (생략)

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.

④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9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) ①----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<u>전주</u> 이설 및 지하매설, 전기·가스·화재 등에 관 한 안전시설물의 설치·개 량·보수 라.·마. (생 략) 3.·4. (생 략) ② ~ ⑦ (생 략)	다. <u>전봇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라.·마. (현행과 같음) 3.·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902